

행정자치부

훈계요구

제 목 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 지연 이행 등

기관명 강원도

관계기관 화천군

관련자 ① 화천군 ○○○○과

지방○○○○○ ○○○

② 화천군 ○○○○과

지방○○○○○ ○○○

③ 화천군 ○○○○과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5. 8. 2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지방○○○○○ ○○○은 2015. 2. 10.부터 2016. 7. 3.까지, 지방○○○○○ ○○○은 2015. 8. 26.부터 2016. 1. 5.까지 각각 ○○○○과에서 감독책임자, 실무책임자, 실무담당자로서 산업단지입주변경계약신청 반려처분과 관련한 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 업무를 처리하였다.

화천군에서는 2013. 9. 2. 민원인²⁷⁾(○○콘크리트 주식회사)으로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13조 등에 따라 ‘레미콘 제조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을 받고 2013. 9. 11. ‘레미콘 제조업’은 「공장입지기준」(화천군 고시 제2008-434호)에서 규정한 입지제한업종에 해당되고 인근 지역의 주민생활, 환경 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하였다.

27) 민원인은 2010. 8. 3. 화천군 ○○면 ○○리 0000 일대에 위치한 ○○농공단지 내 토지를 임차하여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을 하는 공장을 설립·운영하는 내용의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2010. 8. 19. 화천군으로부터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음

이에 대하여 민원인은 행정심판²⁸⁾을 거쳐 2014. 5. 27. ○○지방법원에 위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관서에서는 항소와 상고²⁹⁾를 거쳐 2015. 8. 13. 대법원으로부터 위 관서에서는 민원인이 제출한 신고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를 접수하여야 하고 다른 실체적인 사유인 인근 지역의 주민생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이유로 한 위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는 내용의 취소판결(0000두00000, 산업단지입주변경계약신청 반려처분취소) 결과를 송달 받았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1. 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미이행

「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고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이하 ‘재 처분 의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화천군 규칙 제1047호) 제57조에 따르면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새로운 처분,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귀책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징계 의결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르면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변경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취소판결 확정일로부터 민원

28) 민원인은 2013. 12. 2. 위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3. 6.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음

29) 2014. 12. 5. ○○지방법원에서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소판결(0000구합000)을 선고하였고 2015. 4. 15. ○○고등법원에서도 위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소판결(0000누0000)을 선고하였음

사무 처리기간 내에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 패소된 사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2015. 8. 13. 산업단지입주변경계약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정부합동감사 기간(2016. 9. 20.~10. 7.) 중인 2016. 10. 5.에서야 민원인에게 ‘○○농공단지 입주계약 변경 신청수리’ 통보를 하였다.

그 결과 민원인은 법원으로부터 취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였다.

2.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고시 제정·운영 부적정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³⁰⁾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을 정하면서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새로운 제한사유를 추가할 수 없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관한 절차적 기준을 정하여

30) 공장설립 등의 신청을 받은 시장 등으로서는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신청이 산업집적법이나 산업집적법 시행령이 규정한 제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따져보면 되는 것이고 위 법 제13조나 그 시행령 제19조에 이와 별도의 제한기준을 정한 바 없으므로 위 시행령 제19조 제6항에서 말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관한 절차적 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4716 판결 참조)

고시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2008. 10. 24. 산업집적법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새로운 제한기준을 추가³¹⁾한 「공장입지기준」을 고시하였다.

그 결과 위 관서에서는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효력이 없는 위 고시 규정을 들어 민원인의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에도 반려처분을 하였다.

아울러 2015. 8. 13.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 고시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가 2016. 5. 31.에서야 ‘화천군 공장입지 기준고시 폐지계획(○○○○과-00000호)’을 군수에게 보고하였고 이후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인 2016. 9. 6. 화천군 공장입지기준고시 폐지고시를 하였다.

조치할 사항 화천군수는

앞으로 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지연하여 민원인이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31) 「공장입지기준」 제3조 및 제4조 제1항이 ‘레미콘 제조업의 경우 공장설립 예정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1.5km 이내에 10호 이상의 마을이 있는 경우나 공장설립 부지가 간이상수도에서 반경 1.0km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나 기타 공장이 설립됨으로써 인근 지역의 주민생활, 환경 등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입지를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한 것은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관한 새로운 제한 사유를 추가한 것으로서 산업집적법 제13조 제1항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위 법령의 규정을 보충하는 효력이 없음(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4716, ○○지방법원 0000. 00. 0. 선고 0000구합000 판결 참조)